특수 및 배치전 건강진단 주의사항

■ 금식

- 건강검진 2-3일 전부터 음주, 과로, 기름진 음식은 피하십시오.
- **이상지질혈증, 혈당** 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은 **8시간 이상 금식**을 유지하셔야 합니다.(물 제외)
- 금식기간 중에는 껌, 커피, 사탕 섭취를 절대 금합니다.

■ 약물

- 혈압약, 당뇨약은 건강진단 당일 섭취 가능합니다.
- 다량의 영양제 섭취는 간기능 검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

■ 여성

- 월경기간 중에는 검사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(**월경기간 중 건강진단 경우 채혈 또는 소변검사 시 직원에게 꼭 말씀해주십시오.**)
- 가임기의 모든 여성은 건강진단 전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.
  (방사선 노출로 인한 흉부검사등의 사유)

■ 검사별 유의사항

- 폐활량 검사 :
  검사 1시간 이전부터 흡연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호흡기계 질병 과거력이 있을시, 검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혈액 검사 :
  채혈쇼크 경험이 있을시, 검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채혈 후 문지르지마시고 5분이상 힘껏 눌러 지혈 바랍니다.(충분한 지혈 미실시 시, 멍 또는 붓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)
- 심전도 검사 : 금속 물질을 모두 제거 후 검사하여야 합니다.(ex : 동전,라이터,시계,핸드폰,반지,팔찌 등)
- 청력 검사 : 소음 노출이 중단 된 후, **14시간 이상 경과 후에** 검사 가능합니다.
-

■ 기타

- 혈압 검사 전에는 움직이거나, 말씀하시지 말고 충분한 안정을 취한 뒤 검사 하십시오.
- 장신구 및 귀중품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, 소지하고 오지 마십시오.
- **의사와의 문진 시, 과거력(과거질병, 복용약물 등)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(유해인자 중 아래 물질 해당 시)

생물학적 노출지표(BEI) 검사는 작업 중 유해인자가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실제로 작업자에게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. 유해인자에 따라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 시료 채취 시점이 달라집니다. 체내 머무는 시간이 짧은 경우 작업 종료 후 수 시간이 지나면 체내 농도가 급격히 낮아져 실제 노출 수준보다 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아래의 **채취시기에 따라** BEI 검사를 위한 시료를 받아 냉장 보관 후 내원 하시기 바랍니다.

- **소변시료 채취 방법**

  시료 채취 2시간 전에는 배뇨하지 마시고,
  작업환경 및 의복에 있는 물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,
  손을 깨끗이 씻고 멸균통(Conical tube)에
  10-12ml 정도 채취하시기 바랍니다.
  (소변시료 채취 후 **냉장 보관**)



해당 특수검진(유해) 물질	채취시료	채취 시기
» 톨루엔 » 크실렌(자일렌; 오르소, 파라, 메타) » 헥산(노말헥산) » 디메틸포름아미드(DMF) »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(DMAc)	소변	작업종료 2시간 전부터 종료 직후까지 (*퇴근 2시간 전부터 ~ 퇴근 직전까지)
» 메틸클로로포름(트리클로로에탄, 111TCE) » 트리클로로에틸렌(TCE) » 테트라클로로에틸렌(퍼클로로에틸렌, PCE)		4~5일간 연속근무 후, 작업종료 2시간 전부터 종료 직후까지
» 수은		전일 작업 후 작업 시작 전 (작업 마치고 16시간 경과 후)
» 일산화탄소	혈액	작업종료 후 10~15분 이내
» 납(연, 4알킬연) » 카드뮴		수시 (검진진행 시 채취)
» ρ-니트로아닐린 » ρ-니트로클로로벤젠 » 디니트로톨루엔 » 디메틸아닐린 » 아닐린(아미노벤젠)과 그동족체 » 에틸렌글리콜디니트레이트(니트로글리콜)		수시 (검진진행 시 채취)

■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

유해인자의 주기에 맞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[별표23]

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(제202조 제1항 관련)

구분	대상 유해인자	시기 (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)	주기
1	N,N-디메킬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	1개월 이내	6개월
2	벤젠	2개월 이내	6개월
3	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니트릴 염화비닐	3개월 이내	6개월
4	석면 면 분진	12개월 이내	12개월
5	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	12개월 이내	24개월
6	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	6개월 이내	12개월

■ 특수건강진단 2차건강진단

특수 및 배치전 2차건강진단은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206조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30일 이내에 1차건강진단 기관에 내원 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